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불법정보에 인공지능 합성영상등 추가 등〉  
■ 김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817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불법정보 유형에 성적 수치심 유발·명예훼손 합성영상등 추가 ..... | 3  |
| 2.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 의무 신설 .....    | 10 |
| 3. 국내대리인의 업무 추가 .....                     | 16 |
| 4.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 .....                     | 18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대식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5. 6.

다. 회 부 일 : 2026. 5. 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특정인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적 수치심 유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유형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합성영상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딥페이크 합성물의 유통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 차단 의무 및 긴급 대응 의무의 적용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 유형에 명시적으로 편입시켜 플랫폼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딥페이크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피해자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를 강화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을 통한 이행 의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실효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대리 범위에 긴급 임시조치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긴급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긴급 임시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3제2항 신설).

다. 합성영상등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의 유형에 추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해당 정보에 대한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및 제44조의7제3항).

### Ⅲ. 검토의견

1. 불법정보 유형에 성적 수치심 유발·명예훼손 합성영상등 추가

## 가. 개정안의 내용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불법정보의 유형에 합성영상등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안 제4조의2제1항,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제44조의7제3항).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 <u>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u> )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 |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br>-----<br>-----<br>-----<br>-----<br>-----<br>-----<br><u>-이하-</u> -----<br>-----<br>-----<br>----- |

| 현행                                                                                                                                                                                                                                                                                                                                                                                           | 개정안                                                                                                                                                                                                                                                                                                                                                                                                                                                                                  |
|----------------------------------------------------------------------------------------------------------------------------------------------------------------------------------------------------------------------------------------------------------------------------------------------------------------------------------------------------------------------------------------------|--------------------------------------------------------------------------------------------------------------------------------------------------------------------------------------------------------------------------------------------------------------------------------------------------------------------------------------------------------------------------------------------------------------------------------------------------------------------------------------|
| <p>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2의2. (생략)</p> <p><u>&lt;신설&gt;</u></p> <p>3. ~ 9. (생략)</p> <p>② (생략)</p> <p>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u>제2호의2</u>,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p> | <p>-----.</p> <p>② (현행과 같음)</p> <p>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p> <p>-----</p> <p>-----</p> <p>-----</p> <p>-----.</p> <p>1. ~ 2의2. (현행과 같음)</p> <p><u>2의3. 합성영상등으로서 특정한</u><br/><u>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성</u><br/><u>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타인</u><br/><u>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u><br/><u>정보</u></p> <p>3. ~ 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u>제2호의2, 제</u><br/><u>2호의3</u>-----</p> <p>-----</p> <p>-----</p> |

| 현행                                                                                                                                                                                       | 개정안                                                                                                                                          |
|------------------------------------------------------------------------------------------------------------------------------------------------------------------------------------------|----------------------------------------------------------------------------------------------------------------------------------------------|
| <p>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p> <p>④ ~ ⑥ (생략)</p> | <p>-----</p> <p>-----</p> <p>-----</p> <p>-----</p> <p>-----.</p> <p>-----</p> <p>-----</p> <p>-----</p> <p>-----.</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
| <p>※ 부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 나. 검토의견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성형 AI 등을 활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실제와 분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대상이 연령·직군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

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합성영상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성범죄,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에 부과하고 있으나(제4조의2제1항)<sup>1)</sup>, 그 외에 유통금지 등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한편, 현행법 제44조의7은 음란영상 배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sup>2)</sup>,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

1)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

“방미심위”)의 심의를 거쳐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sup>3)</sup>).

- 이에 개정안은 합성영상등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도 불법정보 유형에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해당 정보에 대하여도 유통 금지 및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이 적용되도록 하여 합성영상등의 유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이 불법정보에 추가하려는 정보 유형은 크게 ① 합성영상등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와 ② 합성영상등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로 구분됨.
- 먼저, ① 합성영상등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성

---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3)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고<sup>4)</sup>, 이는 현행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포섭되므로 현행법에 따른 불법 정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44조의7제1항제1호(“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와도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② 합성영상등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 현행법 제70조제1항<sup>5)</sup>에 따른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동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은 현행법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고 이는 현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포섭되므로 현행법에 따른 불법정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제44조의7제1항제2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와도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같이 성적 수치심 유발·명예훼손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의 유형으로서 별도로 명시할 경우에는 동 유형에 대한 개별적인 심의기준을 사전에 구체화할 수 있고 유형별 통계관리 및 이에 기반한 정책적 대응 등이 보다 용이해지는 측면은 있겠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를 때에도 불법정보로 규제가 가능하고 현행법상 불법정보 유형과의 중첩·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 의무 신설

### 가. 개정안의 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긴급 임시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4조의3제2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br>(생략)<br><u>&lt;신설&gt;</u>                                 | 제44조의3(임시조치) ① (현행과<br>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br>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br>제4항 후단 및 제5항 <sup>6)</sup> 을 준용<br>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br>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br>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신<br>고 접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br>는 바에 따라 긴급 임시조치를<br>하여야 한다.  |
|                                                                                 | ③ 제1항에 따른 임의의 임시<br>조치 및 제2항에 따른 긴급 임<br>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br>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br>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br>다. |

6)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합성영상등을 포함한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조치로서 현행법 제44조의12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수범자로 하여 신고된 정보에 대한 자체 판정 및 후속조치(정보 삭제·접근차단·정보노출 제한, 계정 정지·해지, 수익화 제한, 신고 기각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sup>7)</sup>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히야 한다.

7)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 동 조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접근차단·정보노출 제한 조치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은 2026년 1월 6일 동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같은 해 7월 7일부터 시행된 것임.

○ 반면,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서, 현행법 제44조의12와는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라는 동일한 규율대상에 대하여 수범자, 조치의 내용·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

---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 안 제44조의3제2항은 “긴급 임시조치”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제44조의12제4항에서 약칭하는 임시조치<sup>8)</sup>, 즉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는 것으로 이해됨.

○ 그런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안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긴급 임시조치와 현행법 제44조의12에 따른 조치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특히 제44조의12제3항제1호의 삭제·접근차단·정보노출 제한 조치는 긴급 임시조치와 그 효과가 중첩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행법 제44조의12가 2026년 7월 7일부로 시행되어 향후 집행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현행법상 조치와 긴급 임시조치 효과가 일부 중첩됨에도 수범자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 도입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긴급 임시조치를 도입하더라도 긴급 임시조치와 제44조의12에 따른 조치의 적용 범위 및 양 제도간의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

---

8)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하여 제도 간 중복이나 절차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행법 제44조의12제3항은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sup>9)</sup> 문언상으로는 조치 여부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인지 재량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sup>10)</sup> 등 실무상으로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같은 법 제44조의1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삭제·접근차단·정보노출 제한, 계정의 정지·해지, 수익화 제한 등) 여부 및 조치 내용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적용되고 있음.

-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신고 접수 시…긴급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시 접근차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긴급 임시조치의 경우 신고가 남

---

9)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 7., 9p.

(조치 방법)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사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자사의 자율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한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발되거나 사업자에 대한 조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3. 국내대리인의 업무 추가

#### 가. 개정안의 내용

-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긴급 임시조치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추가함(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br>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br><u>&lt;신 설&gt;</u><br><br><u>&lt;신 설&gt;</u><br><br>3. (생 략)<br>② ~ ④ (생 략) |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br>-----<br>-----<br>-----<br>-----<br>-----<br>-----<br>-----<br>-----<br>1.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긴급<br>임시조치<br>2. 제44조의7제6항에 따른 기술<br>적·관리적 조치<br>3. (현행과 같음)<br>② ~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외사업자로서 이용자수·매출액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대신하여 방미통위에 대한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임.
- 현재 국내대리인은 해외 본사가 보유한 정보를 전달받는 연락 창구에 가까운 지위에 있고, 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현행법 위반 관련 물품·서류 제출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임.
  - 실제로도 국내대리인과 해외 본사 간 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실질적 규제 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음<sup>11)</sup>.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긴급 임시조치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추가하여 규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내대리인이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조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해외 본사와의 연락 또는 해당 조치 지원 업무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방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1) 윤혜선, 2025.3,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 EU 디지털 법제 분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76호,

#### 4.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긴급 임시조치 의무 신설은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불법정보에 합성영상등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별도 신설의 이익이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사 수준에서 수행되어야 할 조치이므로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에 필요한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합성영상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 명예훼손 정보’는 현행법상으로도 규율이 가능하므로 규정 신설의 실익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실질적 판단 이후 긴급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사적 검열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위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228 |